의 안 번 호	5068
의 결 연 월 일	2026. . . (제 회)

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

제 출 자	세종특별자치시장
제출 연월일	2026. 9. 18.

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5068

제출연월일 : 2026. 9. 18.
제 출 자 : 세종특별자치시장

1. 제안이유

○ 202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사업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출연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○ 출연대상 : 재단법인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

○ 출연기간 : 2027. 1. 1. ~ 12. 31.(1년)

○ 출 연 금(안) : 1,002,508천원

- 인건비 : 637,333천원(원장, 경영기획팀 직원 6명)
- 일반운영비 : 311,235천원(일반수용비, 임차료, 공공운영비 등)
- 여비 : 9,800천원(원장·경영기획팀 국내여비)
- 연구개발비 : 12,000천원(인권영향평가 컨설팅 용역)
- 부담금 : 14,500천원(진흥원협의회 회비, 상공회의소 회비)
- 업무추진비 : 17,640천원(기관운영, 정원가산, 부서운영)

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개요

■ 기관명칭 : 재단법인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
■ 설립일자 : 2023. 12. 11.
■ 소 재 지 :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으뜸길 251(3개 대학 통합 창업관)
■ 임원구성 : 8명(이사장1, 이사6, 감사1)
■ 조직구성 : 1원장 5팀 2센터 / 정원 36명, 현원 34명
■ 주요사업 : 일자리, 중소기업·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사업 등

3. 출연근거

○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
○ 「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4. 출연 필요성

○ 일자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’27년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예산 지원 필요

5. 기대효과

○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에 대한 출연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재 양성, 기업지원 등 지역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한 고용생태계 조성

○ 재단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성장에 필요한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 및 서비스 강화

6. 참고사항

○ 2027년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출연금 산출내역

○ 관련 법령

참고1 2027년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출연금 산출내역

[단위 : 천원]

편성목			예산액	세 부 내 역
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(합계)			1,002,508	
인건비	인건비(합계)		637,333	▸ 인상률 4.0% 적용(원장 3.0%)
	본봉	원장 1명	105,060	▸ 8,755천원(월급)*1명*12개월
		경영기획팀 직원 6명	263,728	▸ 4급 4,199,277원(월급)×12개월×1명 ▸ 5급 3,776,580원(월급)×12개월×3명 ▸ 6급 3,224,100원(월급)×12개월×2명
	제수당	경영기획팀 직원 6명	53,916	▸ 시간 외 : 통상시급(월급/209시간)×1.5배×300시간 ▸ 연차: 통상시급(월급/209시간)×8시간×6일 ▸ 가족: 90천원×12개월×1명+40천원×12개월×1명
	퇴직급여충당금	원장 1명	9,464	▸ (연봉+수당+성과급)/12개월
		경영기획팀 직원 6명 + 경제육성팀 육아휴직자 1명(6개월)	31,394	▸ (연봉+수당+성과급)/12개월
	4대보험	원장 1명	12,320	▸ 기본급(연봉-식대)×12개월×12%
		경영기획팀 직원 6명	29,919	▸ 기본급(연봉-식대)×12개월×12%
	평가급	'26년 경영평가 성과금	131,532	▸ '26년 근무자 기준(원장 포함 34명) ※ '26년도 지방출자·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'다' 등급 성과금 지급률 적용
일반운영비	일반운영비(합계)		311,235	
	일반수용비	일반수용비	145,515	
		범용SW 사용자 라이선스	2,400	▸ v3, 한글, MS Office 등
		통합업무시스템 유지관리비·서버수수료	25,942	▸ 유지관리비 12,214천원 ▸ 서버수수료 1,144천원×12개월
		홈페이지 유지관리비	24,176	▸ 유지관리 350천원×12개월 ▸ 서버수수료 19,276천원 ▸ 도메인·인증서·본인확인서비스 700천원
		소모품 구입	6,000	▸ 사무용품, 비품 등 일반 소모품 구입 – 월 500천원 × 12개월
		세무회계대행·회계결산·정산수수료	22,047	▸ 세무회계대행 8,580천원 ▸ 회계결산세무조정 5,767천원 ▸ 외부 회계감사인 운영 수수료 7,700천원
		채용위탁수수료	30,000	▸ 7,500천원×4회

편성목			예산액	세 부 내 역
		자문료(노무사, 변호사 등)	9,600	▸800천원×12월
		홍보물 제작(홍보영상, 인쇄물, 홍보용품)	8,000	▸2,000천원×4회
		지역행사 홍보부스 참여	2,000	▸1,000천원×2회
		사원증 및 업무용 다이어리 제작	1,500	▸25천원×60개(기간제근로자 포함)
		자료 인쇄비	4,000	▸400천원×10회
		내부 행사운영비	5,000	▸1,000천원×5회
		구독료	4,850	▸신문, 간행물 등
	수당	**위원회 등 운영수당**	**11,000**	
		인사위원회·이사회 등 참석수당	8,000	▸100천원×4명×20회
		심사수당(채용 등)	3,000	▸300천원×5명×2회
일반운영비	임차료	**임차료**	**65,621**	
		사무실 임차료	38,333	▸시 공유재산 임차료(통합창업관) ○ 총 임차료 : **58,333천원** – 재산평가액(2,121백만원)*0.05*50%=53,030천원 – 부가가치세 : 53,030천원*10%=5,303천원 ○ (제외) 인자위 사무국 임차료 ≒ **20,000천원** – 재산평가액(365백만원)*0.05=18,250천원 – 부가가치세 : 18,250천원*10%=1,825천원 ○ **58,333천원 – 20,000천원 = 38,333천원**
		공용차량 임차료	19,752	▸1,646천원×12개월
		사무기기 임차료(복합기)	3,936	▸164천원×2대×12개월
		사무기기 임차료(PC)	3,600	▸100천원×3대×12개월 ※일경험 인턴 대상(3대)
	공공운영비	**공공운영비**	**22,109**	
		공공요금 및 제세	16,885	▸법인 소득세·주민세 14,400천원(월1,200천원) ▸우편요금 10천원×100회=1,000천원 ▸회계관계자 신원보증보험 43천원×3명=129천원(원장, 경영팀장, 재무회계담당자) ▸사업 선금·계약보증보험 등 300천원×4회=1,200천원 ▸등기부·인감증명 등 제증명발급 1,200원×130부=156천원
		차량선박비	5,224	▸공용차량 유류대 3,203천원 ▸세차 100천원×12개월=1,200천원 ▸소모품 교체 821천원
	교육	**교육훈련경비**	**4,650**	

편성목			예산액	세 부 내 역
	훈련비	교육훈련경비	4,650	▸ 외부 강사수당 370천원×1명×5회 ▸ 직원교육훈련 위탁비 200천원×7명×2회
	회의행사비	**회의비**	**2,400**	
		회의비	2,400	▸ 20천원×6명×20회(이사회,위원회,노사협의회 등)
	복리후생비	**복리후생비**	**55,940**	
		일반 복리후생 지원	50,000	▸ 1,000천원*50명(기간제근로자 포함)
		급량비	5,940	▸ 9천원×6명×110회(경영기획팀 6명)
	광고비	**광고비**	**4,000**	
		기관 광고료	4,000	▸ 1,000천원×4회(신문, 라디오 등)
여비	**여비(합계)**		**9,800**	
	국내여비	**국내여비**	**9,800**	
		국내여비	9,800	▸ 20천원×7명*×70회 * 원장 1명, 경영기획팀 6명
연구개발비	**연구개발비(합계)**		**12,000**	
	연구개발비	**연구개발비**	**12,000**	
		연구용역비	12,000	▸ 인권영향평가 컨설팅 용역
부담금	**부담금(합계)**		**14,500**	
	부담금	**협의체 부담금**	**14,500**	
		협의체 부담금	14,500	▸ 진흥원협의회 연회비 13,000천원 ▸ 상공회의소 연회비 1,500천원
업무추진비	**업무추진비(합계)**		**17,640**	
	사업추진비	**사업추진비**	**9,600**	
		기관운영업무추진비	9,600	▸ 800천원*12개월
	관서업무비	**관서업무추진비**	**8,040**	
		정원가산업무비	2,880	▸ 80천원*36명('26년도 정원 기준)
		부서운영경비	5,160	▸ 430천원*12개월('26년도 정원 기준)

참고2 관련 법령

□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**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**

□ 지방자치단체 출자 ·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20조(재정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**해당 출자·출연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**할 수 있다.

□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4조(재산 등) ① 진흥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**세종특별자치시 출연금 및 보조금**
2.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
3.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
4. 그 밖의 수입금

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진흥원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소관 실·과		기업지원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기업지원과장 김용준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기업정책팀장 김선영
	담당자 성명·전화	지방행정주사 이종준(044-300-4812)